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86호 2017. 4. 5.(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41호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7-42호 거창군 군계획시설(공간시설:교통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

거창군 고시 제2017-4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8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45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 청취 열람 공고 10

거창군 공고 제2017-454호 2017년 2/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안건 공고 11

거창군 공고 제2017-461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3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7-41호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합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7. 03. 30.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사업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사업부지	건축면적	연면적		
유통업 무설비	거합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1 1번지 일원	91,587	3,210	11,151.3 -기존: 9,914.3 -증축: 1,237	13,042.78 -기존:11,805.78 -증축: 1,237	거고43호 (2008.09.25)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7. 4월
- 준공 예정일 : 2018. 03.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5.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비 고
	리	지번						
1	거창읍 대평리	543-10	구	64	45	19	거창군	
2	거창읍 대평리	1329-3	도	80	54	26	거창군	
3	거창읍 대평리	1344-2	답	167	167	-	거창군	
4	거창읍 대평리	1345	답	1,076	236	840	거창군	
5	거창읍 대평리	1347	창	35,027	1,145	33,882	거창군	
6	거창읍 대평리	1347-9	답	793	480	413	거창군	
7	거창읍 대평리	1347-11	답	1,098	1,083	15	거창군	
합계				38,305	3,210	35,195		

거창군 단계계획시설(공간시설:교통광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거창군 계획시설(공간시설 : 3호 교통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제100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7. 4. 3.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 류	명 칭	위 치	시행규모	사업기간	최 초 결정일
공간시설 (교통광장)	대동로터리 조성사업	거창읍 대동리 829-1번지 일원	광장조성 R=80.0m 5,095㎡	당초:2012.03.~2016.12.31 변경:2012.03.~2017.12.31	건고제2113호 (‘65.12.31)

2.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번지)

나)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3.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시행 조서

종류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시행규모 면적(㎡)	시행구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공간 시설	교 통 광 장	거창	대동	5,095㎡	거창읍 대동리 829-1번지의 41필지	건고 제2113호 (‘65.12.31)	2012.03 ~ 2017.12.31

4. 관계도면 : 게재 생략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2)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붙임조서)

(붙임 :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25,889	5,095					
1	거창읍 대동리	828-3	도	387	324		국(건설부)			
2	거창읍 대동리	890-5	대	169	21		국(건설부)			
3	거창읍 대동리	829-1	도	460	460		국(재무부)			
4	거창읍 대동리	829-2	도	43	43		국(건설부)			
5	거창읍 대동리	861-2	도	50	15		국(건설부)			
6	거창읍 대동리	861-8	대	78	78		거창군			
7	거창읍 대동리	861-6	대	119	119		“			
8	거창읍 대동리	861-5	대	166	166		“			
9	거창읍 대동리	861-1	대	186	186		“			
10	거창읍 대동리	829-3	도	33	33		“			
11	거창읍 대동리	964-33	도	10	10		국(건설부)			
12	거창읍 대동리	964-34	대	13	2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1 주공아파트 418-204	이*인			
13	거창읍 대동리	841-9	대	15	15		거창군			
14	거창읍 대동리	841-4	도	787	415		“			
15	거창읍 대동리	841-3	대	10	10		“			
16	거창읍 대동리	841-2	대	119	119		“			
17	거창읍 대동리	830-2	도	13	13		“			
18	거창읍 대동리	841-8	대	77	77		“			
19	거창읍 대동리	837-6	도	20	20		“			
20	거창읍 대동리	840-4	도	178	178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1	거창읍 대동리	840-3	도	72	72		거창군			
22	거창읍 대동리	782-5	도	1,485	608		국(건설부)			
23	거창읍 대동리	837-3	도	354	295		국(건설부)			
24	거창읍 대동리	831-3	도	162	162		국(재무부)			
25	거창읍 대동리	826-5	대	87	87		거창군			
26	거창읍 대동리	827-5	대	107	107		거창군			
27	거창읍 대동리	826-1	대	272	272		거창군			
28	거창읍 대동리	823-1	대	10	10		“			
29	거창읍 대동리	825-2	대	38	38		“			
30	거창읍 대동리	826-4	도	68	68	대동리 826-1	박*석			
						중앙리 364	백*길			
31	거창읍 대동리	825-1	도	75	32		거창군			
32	거창읍 대동리	964-1	도	19,153	319		국(건설부)			
33	거창읍 대동리	815-8	도	346	48		거창군			
34	거창읍 대동리	831-4	도	142	142	대동리 831-1	김*헌			
35	거창읍 대동리	831-5	도	56	56		거창군			
36	거창읍 대동리	831-1	대	93	93		“			
37	거창읍 대동리	831-2	대	13	13		“			
38	거창읍 대동리	832-5	대	41	41		“			
39	거창읍 대동리	837-5	대	96	96		“			
40	거창읍 대동리	836-3	대	166	166		“			
41	거창읍 대동리	837-1	대	99	45		“			
42	거창읍 대동리	860-1	대	21	21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4. 0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035-73 외 4건(부여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8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42	2009-04-01	2017-04-05	마을 북동쪽 모래독걸 남쪽에 서 아월천 서쪽일때까지의 논 들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3	2009-04-01	2017-04-05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98, 산86-30, 1087-4, 1087-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035-73	2009-07-02	2017-04-05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궁향리 1346-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웅길 20-101	2009-04-01	2017-04-05	거창군 고제면과 거창군 웅양 면을 잇는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52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1길 119-42	2009-12-28	2017-04-05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 째로 분기되는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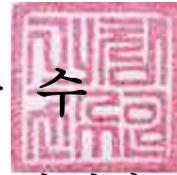
거창군 공고 제2017-45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한 『154kV 거창-합천 송전선로 권원확보(보상)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3.

경상남도 거창군 수



1. 사업명 : 154kV 거창-합천 송전선로 권원확보(보상)사업

※ 당해 사업은 송전선로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며, 상세한 보상내용은 추후 보상사업 시행시 한국전력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3. 공고기간 : 2017. 4. 4. ~ 2017. 4. 18

4. 의견제출기간 : 2017. 4. 4. ~ 2017. 4. 18.

5. 실시계획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거창군 경제교통과

6. 문의처

- 한전 경남지역본부 송전운영부(☎ 055-717-2676, 2677, 2680, 2524, 2781)
-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712)

별첨: 실시계획 신청서

거창군 공고 제2017-454호

2017년 2/4분기 『거창군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할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이 있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4월 03일

거창군수

1.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
2. 제출기한 : 2017년 04월 28일
3. 도로점용사업계획서 제출 : 거창군청 건설과
4. 문의처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 940-3553)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출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도로의 종류

점용구분

점용(공사) 건명

점용기간

점용의 목적

비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작성방법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등을 명시합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서 영업장 면적 및 제외가 되는 일부 휴게음식점영업의 업종 개정(안 제2조)
 -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규제 삭제(안 제18조제1항)
4. 입법예고기간 : 2017. 4. 5. ~ 2017. 4. 24.(20일간)

5.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055-940-3505, Fax055-940-3759** 또는 메일 **minooha@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055-940-350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4. .
제 출 자	환경과장

1.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서 영업장 면적 및 제외가 되는 일부 휴게음식점영업의 업종 개정(안 제2조)
- 나.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규정 삭제(안 제18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2017. 4. ~ 4.) : 입법예고 후 기술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항이동 및개정2014.10.01)~~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항이동2014.10.01)

③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항이동 및 개정2014.10.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 (생 략)</p> <p>2. (생 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p>4. (생 략)</p> <p>5. (생 략)</p> <p>6. (생 략)</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군수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항이동 및개정2014.10.01)</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제2조(정의)</p> <p>1. (생 략)</p> <p>2. (생 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p>4. (생 략)</p> <p>5. (생 략)</p> <p>6. (생 략)</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u>삭 제</u></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거창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 따라 제225회 거
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

1. 집회일시 : 2017년 4월 14일(금요일) 10:00
2. 집회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4월 5일

거창군의회 의장 김 종 두